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제 415-10/2 (전화번호)	관할부서 건설사항
처리기간	가.	<div style="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시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장</div>
시행일자	가.	
보존년한		
보조기관	제2부시정 도시정미과 도시계획과	법무담당관 심사필 구획정리과장 지역계획계장 도시행정과장
기안적임차	정 광 훈 가.	조 도시행정과장
경유 수신 창조	가 안 참 조	발 신

결재
1977. 7. 22
No. 1217

제1안: 내부처제
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 및 화물자동차 정류장) 변경 및 결정과 지정승인
 1. 양면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화물리미널 확장계획에의거
 서울시 근시 제175호(74.12.2)에 의거 동대문구 상봉동
 19-7 일대에 도시계획시설(화물자동차 정류장)로 기결정한
 것을 폐지하곤 동대문구 면목동 1049 일대에 별안과 같이
 유통업무설비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전철부근시
 제4호(77.3.16)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근시 제1호 합니다
 2. 본건을 제6차 당시 도시계획위원회(77.5.13)
 에서 심의 가결된 사항입니다

제2안: 근시안
 서울특별시 근시 제 1호
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 및 화물자동차 정류장) 변경 및 결정과 지정승인
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 및 화물자동차 정류장) 변경 및 결정과 지정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엿기 도시계획법 제12조
 및 제13조와 전철부근시 제4호(77.3.16)의 권한위임

검
 인

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2.

서울특별시장

○ 시설 변경 및 결정과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(M ²)	비고
기정	화물자동차정류장(도부)	동대문구 상봉동 19-7 일대	8,853.8	
변경	-	-	-	폐지
신설	유통업무설비(도부)	동대문구 면목동 1049 일대	약 21,350	

별첨 2면 도시와 건물(도면영략) '붙'

제 3 안

수신: 건설부장관

제목: 동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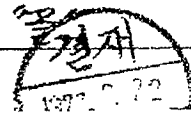
도시계획	1972. 2. 21	제 22호
담당자	별첨	관

발신: 시장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 및 화물자동차정류장)

변경 및 결정과 지적승인 하역기 변경합니다

첨부: 도시문서본 및 관계도면 1부



제 4 안

수신: 총무처 장관(문화공보관)

발신: 시장(공장)

제목: 관(시)보 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(시)보 게재 의뢰 합니다.

가. 게재 구분: 고시.

나. 게재 내용: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 및 화물자동차정류장) 변경 및 결정과 지적승인

다. 근거법규: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

라. 게재 비용: 별첨 도시문서본 251

첨부: 도시문서본 2매(1매) '붙'

제 5 안 :

수신 : 동대문구청장

발신 : 시장

제목 : 등전

1. 귀주 관내 도시계획 사공이 별첨 기사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게시되었기 통보하니 관계도면 정리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남에게 해근 도시 계획 업무에 차고 없도록 할 것

첨부 : 기사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"붙"

제 6 안

수신 : 구획정리과장 도시행정과장 ~~시정행선~~ 과장

제목 : 등전

1. 별첨 기사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게시 되었기 통보하니 도시계획상 필요한 시설 용지를 도시계획시설 (동부) 우통업무 설비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첨부 : 기사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"붙"

제 7 안

수신 : 운수과장 (운수 2과장)

발신 : 과장

제목 : 등전

1. 운삼 1540-0243 (77.5.4) 의 관전입니다.

2. 위호로 요청한 동부리미날이 별첨과 같이 게시되었기 통보하니 관계업무에 차근하게 바랍니다

첨부 : 기사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"붙"